

현안분석

2016-07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무원의 직무회피 제도 및 법제 연구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현안분석 2016-07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무원의 직무회피 제도 및 법제 연구

이 유 봉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무원의 직무회피 제도 및 법제 연구

The Study on Recusal of Public Officials
for avoidance of conflict of interest

연구자 : 이유봉(부연구위원)
Eubong Lee

2016. 11. 15.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공직자의 이해충돌의 상황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음
-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재산상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서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의 이해충돌해소를 위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해충돌의 해소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직무회피제도임

□ 연구의 목적과 범위

- 현행법과 제도상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회피제도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관련 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시함
- 직무회피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령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해소방안으로서의 직무회피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기로 함

II. 주요 내용

□ 직무회피 관련 현행 법령

-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정하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하나로서 제정된 대통령령임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적용되며, 금전적 이해관계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의 인적 범위(자신,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직접적 관련이 있을 것)를, 직무관련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의 인적 범위(4촌 이내의 친족이나 재직 단체나 그 대리인)를 정함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직근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하여 직무의 일시적 재배정을 받거나, 어려운 경우 소속기관장에 보고되어 인력의 재배치를 받음으로써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
- 「공직자윤리법」은 재산상의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백지신탁, 퇴직 후 취업 및 행위제한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재산공개대상인 공직자는 매각대상 또는 백지신탁 대상 주식 발행 기업의 경영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대한 직무 관여를 금함
 - 대리자를 정하는 조치 등 직무회피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소속기관 장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음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함
-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사실, 금지된 금품 수수, 약속, 의사표시 등과 관련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은 법관 등에게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재판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 규정함
- ‘제척’은 법관 등에게 당사자나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나 관여이력 등의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법률로 참여를 금하며, ‘기피’는 사건 당사자가 법관 등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건 당사자의 신청으로, ‘회피’는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감독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판 업무를 면함

□ 직무회피 관련 해외 제도 및 입법

- 미국은 공무원의 공직 수행에 있어서의 충성의무를 선언하면서도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정부작용이 올바르게 작동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해충돌의 해소방안의 하나로서 제척이나 직무회피수단을 이용해 음

- 이에 관한 규정으로는 미국연방법 제208조와 공직자윤리법 규정
 정이 있으며, 공무원 및 가족 등의 재산상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현실적 가능성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참여일 것을 요
 구하는데, 여기서 직접성에는 부서의 장으로서의 감독권도 포함
 되는 것으로 해석됨
- 캐나다의 「이해충돌법」에서 규정하는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직상의 권한이나 의무의 수행을 통해 자신, 친척, 친구나 부적
 절하게 타인의 사익을 증진시키는 경우를 말함
- 「이해충돌법」은 이해충돌의 해결수단으로서 직무회피, 재산등록
 및 공개, 공개신고(직무회피 사항 포함), 백지신탁 등을 제시함
- 가족 및 친족의 범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적 이익에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공무원에 영향을 주는 경우 등은 제외하며,
 직무회피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에 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신고
 의무를 부여함

□ 직무회피 관련 제도 개선안

-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성실한 직무
 수행이 사실상 이루어지기 힘들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직
 무회피는 정부의 정당한 기능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를 충족
 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성실 직무수행 의무와 동일
 한 선에서 취급될 수는 없을 것임
- 직무회피와 관련하여서는 각 법령상 규정된 제도를 볼 때, 법령
 상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척’에
 준하는 경우와,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의해서 직무에서 면하게
 되는 ‘회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공직자윤리법」은 매각대상 또는 백지신탁된 주식에 대해 직무의 관여를 금지하면서, 그 수단으로서 공직자 본인의 직무대행 조치와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직위 변경신청 외에도 당사자의 적극적인 회피신청과 이에 따르는 조치를 위한 절차를 둘 필요가 있을 것
- 직무회피 방식으로는 단계적으로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직무회피의 기간이나 범위에 따라 상관의 조치로서 가능한 경우나 소속기관장의 처분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임
- 「공직자윤리법」은 본인의 직무대행 조치와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신청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해충돌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직무회피수단을 단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의 경우에는 발행기업이 업무상 관련자인 경우에는 사무분장변경 이상의 조치로서 직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해당 기업이 집단의 하나로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보다 낮은 수준의 수단으로도 무방할 것
- 그밖에 재산등록시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피하여야 할 업무에 대한 고지 및 이에 해당할 경우 공직자의 신고와 이에 따른 회피절차에 관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임
- 퇴직 공직자에 대하여도 업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직무 관여의 금지와 이에 대한 제척 및 회피 절차를 마련하고 불간여를 조건으로 취업을 인정한다면, 현재의 업무상 밀접 관련성 기준

해당 여부 만에 의하여 취업가부를 결정하는 취업제한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보다 장기적 개선방안으로서는 현행법과 같이 재산 및 업무상의 이해충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과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들을 일원화하고, 이에 대하여 이해충돌의 방지수단에 대한 상담 및 기준제시와 같은 전문적 판단능력을 갖춘 독립기구를 두는 것이 적절할 것

Ⅲ. 기대효과

□ 정책적 효과

- 이해충돌 회피수단으로서의 직무회피제도의 체계화
 - 여러 법령상 존재하는 직무회피 수단에 대하여 그 요건 및 방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직무회피의 활용을 위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함
- 공직자의 재산 또는 업무상 이해충돌 방지 정책에 활용
 - 공직자의 관련된 재산상의 이해관계의 유형, 업무상 관련성의 유형에 따른 이해충돌 양태에 따라 이해충돌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직무회피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주제어 : 이해충돌, 직무회피, 제척, 공직자윤리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Background to This Study

- Conflicts of interest involving public officials may occur in various situations, and different methods can be adopted to prevent it.
-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stipulates the acts that are prohibited to ensure the fair performance of public duties, and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enumerates property registration, disposal or blind trust of stocks, etc. as a solution to conflicts of interest involving property.
- Despite the diverse systems for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set forth in the current laws, it is in fact extremely difficult to resolve the problem. As such, this paper proposes a system of recusal as a more practical and specific method of resolving it.

Purpose and Scope of This Stud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eans of improving the related laws by analyzing the recusal of public officials stipulated in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more systematically as a method of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 Though there are many laws that contain clauses related to the recusal of public officials, this study will mainly discuss how to improve the recusal system in order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as stipulated in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II. Main Contents

Current Laws Related to Recusal

-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is a presidential decree which sets forth the criteria for the behavior of public officials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 Applicable to public officials and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of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the code defines the range of relationship in monetary interest (i.e. to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oneself or one's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one's spouse, and the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of one's spouse) as well as the range of relationship of interest for people related to one duties (relatives of first cousin status or closer, the organization one is working for or its agents).
 - If a case appears to fall under any of the above categories, the public official concerned may consult with his or her immediate superior or the person responsible for supervising the code of conduct for the temporary reassignment of duties. If it is difficult to do so, the matter can be reported to the chief of the

organization so that the duty can be avoided by a relocation of the employee(s) concerned.

○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stipulates the registration and public disclosure of property, blind trust of stocks, and restrictions on employment and activities after retirement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 involving property.

- Public officials subject to public disclosure of property are prohibited from involvement in or performance of a duty which may affect the management or property right of the company that issued the stocks to be disposed or entrusted.

- Necessary measures such as deciding on a substitute should be taken for recusal, and it is possible to ask the chief of the affiliated organization to be transferred to another position unrelated to the duty in question.

○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prohibits public officials, etc. from making illegal requests or exchanging interests including money and valuables in order to guarantee the fair performance of duties.

- According to the law, if it is possible for the chief of an affiliated organization of a public official, etc. to take such measures as temporary suspension of participation in a duty, assignment of a substitute for a duty, or transfer to another department if it is considered that the person concerned cannot perform a duty fairly

due to the improper solicitation, acceptance of prohibited money or valuables, promise, expression of will, etc.

○ *Civil Procedure Act*

- The *Civil Procedure Act* stipulates such means as disqualification, evasion and recusal in order that a judge, etc. will not take charge of a case when it is difficult to conduct a trial fairly.
- “Disqualification” means that a judge, etc. will be prohibited from participating in a case related to private interest. A judge can also be exempted from trial duties by “evasion,” which can be requested by the person concerned in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expect a fair trial by the judge, etc., or by “recusal” with the approval of the supervising court when there is a reason for disqualification or evasion.

□ Overseas Systems and Legislations Related to Recusal

- In the U.S., disqualification or recusal has been used as a method of avoiding conflicts of interest, thus recognizing that the government’s function cannot be fulfilled properly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despite the declaration of faithful performance of duties by public officials.
- The related rules include 18 U.S.C. § 208 and the regulations of the Ethics Office which require personal and substantial participation with issues which may influence the property interest of public officials, their family, etc. Here, “personal and substantial participation” is interpreted to include the supervision right of the head of the department.

- “Conflict of Interest” in the *Conflict of Interest Act* of Canada is defined as promoting one’s own interest or that of one’s relatives, friends or other persons in cases where public officials use their authority or perform duties.
- The *Conflict of Interest Act* presents recusal, registration and public disclosure of property, public reporting (including matters of recusal), blind trust, etc. as potential solutions to conflicts of interest.
- The scope of family and relatives is set by the law. Private interest does not include attempts to influence public officials as a member of a group. Public officials who fall under a situation involving the obligation of recusal have to report it.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e Recusal System

- In the event of a conflict of interest, it becomes extremely difficult to perform one’s duty fairly and faithfully. In order to avoid such a situation, recusal is recognized for the satisfaction of the preposition of the fulfillment of fair government function, and may not be treated as being the same as the duty of faithful performance of duty.
- In relation to recusal, each law stipulates “disqualification” which excludes a person from a particular duty if it falls under a certain situation defined by the law, and “evasion” which exempts the person from a duty by the application of the government official concerned.

-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prohibits the involvement of the position with the stocks to be disposed or entrusted, and stipulates the assignment of a substitute for the public official concerned or a request for transfer to another position unrelated to the duty in question. In addition to the request for a change of pos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set up measures for the active request of the official concerned for recusal and the following steps.
- As regards the types of recusal, they include assignment of joint performers of a duty, temporary suspension of participation in the performance of a duty, assignment of a substitute, change of division of works, transfer, etc. According to the period or scope of recusal, the decision of one's superior is usually enough, though sometimes it will be necessary for the chief of the affiliated organization to make a decision.
-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only stipulates measures for the assignment of a substitute and the request for transfer to another position unrelated to the duty in question. It will be necessary to make it possible to use various means of recusal by stag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nflict of interest.
- Regarding the blind trust of stocks in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it will be appropriate to prohibit involvement in a duty by applying measures that are stricter than simply changing the division of work if the company which issued the stocks is related to the duty, while it will be enough to use a lower level of measure if the company concerned is a member of a group and is influenced indirectly.

- Furthermore, if a conflict of interest occurs at the time of property registration, it will be possible to introduce a system related to the report of the public official and the recusal procedures.
- Regarding the retirement of public officials, too, the rigidity of the current restriction on employment, which determines the possibility of employment simply by the applicability of closeness of duty, can be complemented if procedures for disqualification and evasion are prepared and employment is recognized on the condition of non-involvement.
- In the long term, it will be better to unify the current regulation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and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which set forth the conflicts of interest in property and work and stipulate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organization with the capacity for professional judgment in consulting and proposing standards for avoidance of conflicts of interest.

III. Expected Effects

Policy Effects

- Systemization of recusal as a method of avoiding conflicts of interest;
- Basic information for recourse to recusal can be provided by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requirements and types of methods of recusal existing in various laws.

- Usage in policies for avoiding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ublic officials involving property or work
- The recusal system could be used in various ways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 according to the patterns of conflict of interest in various types of relationships with property and work involving public officials.

➤ Key Words : conflict of interest, recusal, disqualification, public ethics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9
제 1 장 서 론	21
제 1 절 연구 목적 및 범위	21
제 2 절 연구 방법	22
제 2 장 직무회피 관련 현행 법령 및 그 적용	23
제 1 절 직무회피 관련 현행 법령	23
1. 공직자 행동강령	23
2. 공직자 윤리법	27
3.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33
4. 민사소송법	35
제 2 절 현행법상 직무회피의 적용사례	38
1.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사례	38
2. 기타 직무회피 관련 사례	42
제 3 절 직무회피 관련 현행법 비교분석	43
제 3 장 직무회피 관련 해외 제도 및 입법	49
제 1 절 미 국	49
1. 이해충돌 기본원칙	49
2. 제 척	51

제 2 절 캐나다	60
1. 이해충돌 기본원칙	60
2. 직무 회피	61
제 4 장 직무회피 관련 제도 개선안	67
제 1 절 공직윤리의 기본 이념	67
제 2 절 공직자윤리법 개선안	69
1. 주식백지신탁의 직무회피제도 개선방향	69
2. 재산등록제도의 직무회피 적용가능성	72
3.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제도에서의 직무회피 적용가능성	73
제 3 절 관련 법제도의 장기적 개선 방안	75
참 고 문 헌	77

표 목차

[표 1] 직무회피대상인 직무상 이해관계의 범위	25
[표 2] 직무 회피 관련 현행 법령 비교	45
[표 3] 재산적 이해관계에 관하여 미국 환경보호청의 제시된 사례	53
[표 4] 미국 환경보호청의 제척 면제신청 인정 기준	58

그림 목차

[그림] 캐나다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의 직무회피 관련 공개선언	66
---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의 상황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금지행위,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외부활동과 관련된 행위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주로 재산상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서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도를, 퇴직 전후 발생될 수 있는 인적인 이해관계를 통한 부당한 영향력 배체를 위하여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이해충돌해소를 위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해충돌의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직무회피제도이다.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법」상의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운영실질을 본다면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어떠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도 사실상 이해충돌가능성은 낮은 경우도 있는 반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이해충돌가능성이 사실상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직무회피제도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현행제도상 결함을 적절히 메꿀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재산심사시에 공직자 소유의 특정재산이 해당 공직자의 담당 업무와 이해충돌이 있음이 발견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권리제한이 적으면서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은 직무회피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위주로 운영되어 와서, 전문성 사장과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반면, 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해충돌 발생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경직된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고 관련된 이해충돌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직무회피제도 설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공무원행동강령」에서 특정한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에 대한 회피규정을 두고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해소방안으로서의 직무회피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는 것으로 하기로 한다.

제 2 절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현행법상 직무회피 관련 법령을 분석하였다. 현행법상 직무회피관련 규정인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민사소송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 규정을 분석하였다.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직무의 회피’ 적용 사례를 분석하였다.

둘째, 직무회피 제도에 관한 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재산 등의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직무회피 관련 법 및 적용상의 해석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제도와의 비교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을 통해, 「공직자윤리법」의 직무회피 관련 제도 개선안으로서, 주식백지신탁제도에서의 직무회피제도 개선방향과, 재산등록제도에서의 직무회피 적용 가능성 여부,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제도에서의 직무회피 적용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 2 장 직무회피 관련 현행 법령 및 그 적용

제 1 절 직무회피 관련 현행 법령

1. 공직자 행동강령

(1) 법적 성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¹⁾(이하, 「부패방지법」으로 약칭함)은 부패의 예방과 규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의 확보 및 청렴한 공직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제1조).

이를 위하여 이 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와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의무의 준수를 위하여 각 헌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행동강령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행동강령」²⁾이, 법원규칙으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³⁾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⁴⁾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헌법재판소 공무원행동강령」이 제정되었다.⁵⁾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8.2.29., 기존의 「부패방지법」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면서 통합하여 법률 제8878호로 제정되었으며, 2016.3.29., 법률 제14145호로 최종개정되어, 2016.9.30. 시행됨.

2) 2003.2.18.,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은 대통령령 제17906호로 제정되어 2003.5.19. 시행됨. 그 후, 2005.12.9.,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개정됨, 2016.9.27., 대통령령 제27518호로 최종 개정, 2016.9.28.시행. 이하에서 기술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 내용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제5조,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제4조와 동일하여 이하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만 살펴보기로 함.

3)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2003.5.21., 대법원규칙 제1824호로 제정, 2013.12.31. 대법원규칙 제2512호로 개정, 2014.1.1. 시행).

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2003.5.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01호로 제정, 2010.12.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3호로 최종 개정, 2011.1.1.시행).

5)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2003.8.16., 헌법재판소규칙 제146호로 제정, 2014.12.16.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행동강령은, ①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②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③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④ 그 외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이러한 각 기관에 속한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이나 단체 관련 징계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3항 및 4항).

(2) 「공무원 행동강령」의 직무 회피

1) 적용 대상

그 적용대상인 ‘공직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직원이다. 공무원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이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공무원 외에도,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 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도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2) 이해관계의 범위

이때 일정 범위의 사적 관계의 자는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민법」상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된다.⁶⁾ 친족관계 외에도 소속단체 및 그 대리인과 관련된 직무도 동일하게 취급된다.

헌법재판소규칙 제357호로 최종 개정, 2014.12.16. 시행).

6)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그러나 ‘금전적 이해’의 범위나 ‘그 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표 1] 직무회피대상인 직무상 이해관계의 범위⁷⁾

구 분	범 위
금전적 이해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 ○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직무 관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혈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 :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 직계비속 : 자, (외)손, (외)증손, (외)고손 ○ 방계혈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질, 종손, 생질, 이손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 백숙부, 고모, 외숙, 이모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외)종형제, 이종형제 ○ 양자 및 그 혈족과 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 또는 남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단체 및 관련자 ○ 본인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 단체의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로 정한 자

7)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회신된 사안임.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제13주차 자료”, p.2 표 참조하여 재구성,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2016.10.15 방문).

3) 회피 직무

직무수행자 자신과 일정 범위의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무당사자인 직무이거나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금전적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직무이다.

4) 회피 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단순 민원 업무의 경우에는 직무회피의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

5) 회피 절차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수행자가 자신과 일정 범위의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한 직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⁸⁾

상담요청에 따른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의 판단 결과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직근 상급자가 직무의 일시적 재배정을 할 수 있고, 일시적 재배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기관장은 직무가 공정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 재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3항)

6) 회피 의무 위반 효과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속 기관 내부의 징계처분에 처하게 된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⁹⁾ 또한 징계는 아니나, 징계사유가

8) 여기서 ‘행동강령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장이 해당 기관이나 그 소속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및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하게 된다 (제23조).

9) 「국가공무원법」, (2015.12.24., 법률 제13618호로 최종 개정, 2016.6.25.시행), 제78조.

재산상 이득과 관련되는 경우에 취득되는 이득에 대해 부과되는 징계 부가금이 있다.¹⁰⁾

< 공무원 행동강령 >

제 5 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 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 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 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 자인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 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2. 공직자 윤리법

「공직자 윤리법」¹¹⁾은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재상형성과정과 취득 내역을 등록 및 공개하고,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 및 행위

10)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11) 「공직자윤리법」(1981.12.31., 법률 제3520호로 제정, 2016.1.19., 법률 제13796호로 최종 개정, 2016.9.1.시행).

제한을 통한 부정한 재산증식 및 이익의 취득을 규제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추구 사이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자 윤리에 관한 법이다(제1조).

이 법은 공직자가 재산상의 이해와 관련된 직무수행상의 어려운 상황(이해충돌상황)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익우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제2조의2).

이 법에서 규정하는 직무회피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주식백지신탁에 있어 신탁된 주식 관련 직무에 대한 회피의무에 관한 규정과(제14조의11), 퇴직한 공직자가 재직 중에 간여한 업무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제18조의2)

(1) 백지신탁 주식 관련 직무 회피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대상자나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 주식 발행 회사의 경영이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를 금하고 있다. 즉, 주식을 통하여 직무 담당 공무원의 재산상의 이해관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에게 직무를 처리하게 하거나, 직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제14조의 11).

1) 이해관계의 인적 범위

여기서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재산등록 대상으로서의 인적 범위에 해당하는, 본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본인의 직계 존속·직계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 제외)이 해당한다(제4조 제1항).

2) 이해관계의 물적 범위

공직자나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매각 또는 신탁대상 주식의 발행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과 관련된 업무이다.

3) 회피 직무

금지되는 직무에 대하여는 보유 주식 발행 기업의 재산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제14조의11 제1항).

4) 회피 절차

직무 회피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4조의11 제2항) 그 외 매각 또는 신탁대상 주식을 보유한 공무원은 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을 소속기관장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은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장은 신청 후 1개월 내에 직위변경을 할 수 있다.

5) 회피 기간

이러한 직무 회피의무가 부여되는 시간은, 1)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탁된 주식처분 완료 시점까지이고, 2) 직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변경된 직위에 관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결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은 날까지이다.

6) 회피 면제

위와 같은 직무 관여가 금지되는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무에 관여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 공직자윤리법 >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공개대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2.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직위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② 공개대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자등은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매 분기 동안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신고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공개대상자등은 그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사항을 명시하여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사항과 무관한 직위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가 변경된 공개대상자등이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 이행기간은 직위 변경 신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2) 퇴직 공직자의 재직 중 직무 관련 회피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경우 재직 중의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는 퇴직 후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상관없이 퇴직 후에 취급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제18조의2 제1항) 그리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2년 전 부터 퇴직 시까지 근무한 기관에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도 처리할 수 없다. 업무가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 등은 각 헌법기관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의2 제2항)

< 공직자윤리법 >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위반시 효과

< 공직자윤리법 >

-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 ⑤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신고로 인하여 소속 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백지신탁된 주식 관련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직무에 간여한 경우와 불가피한 경우에 직무관여가 허용된 경우 관여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제22조 14의2호) 징계 외에도 위와 같이 직무회피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30조 제3항 1호)

그리고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처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29조 2호) 또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시점으로부터

2년 전부터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경우에는 5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30조 제1항)

3.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이익을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에 제정된 법이다.¹²⁾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이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사실, 금지된 금품 수수, 약속, 의사표시 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적법한 처리절차를 통해 해당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적용 대상

이 법상 “공직자등”으로, 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2)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3)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기타 법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임직원,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해당된다(제7조제1항, 제2조).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3.27., 법률 제13278호로 제정, 2016.9.28. 시행).

(2) 이해 관계의 범위

공직자등에 대해 부정청탁이 있었거나, 금지된 금품 수수, 약속, 의사표시와 관련된 직무이다. 금품수수등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요구되어지지 않으므로,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직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직무 참여 중지 등 절차

공직자등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신고·확인과정에서 관련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헌법기관의 령으로 정하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직무 참여 일시중지나 직무 대리자의 지정에 의해서도 직무가 적절히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전보조치를 취할 수 있다(시행령 제7조제1항). 그리고 기타 조치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과 사무분장의 변경이 해당한다(시행령 제7조제2항).

이러한 조치는 소속기관장이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았거나 그 약속, 의사표시 등의 사실을 안 경우 또는 신고, 반환, 인도, 수사기관에의 통보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또한 마찬가지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생략)

-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생략)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생략)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생략)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¹³⁾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재판을 담당하지 않도록 제척, 기피, 회피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법원사무관도 마찬가지로 제척, 기피, 회피가 적용되며, 전문심리위원은 제척 및 기피가, 감정인에게는 기피가 적용되어진다.

13) 「민사소송법」(1960.4.4., 법률 제547호로 제정, 2016.3.29., 법률 제14103호로 최종 개정, 2016.9.30. 시행).

제척은 법관 등에게 당사자나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나 관여이력 등의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법률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이고(제41조), 기피는 사건 당사자가 법관 등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며(제43조), 회피는 법관이나 법원사무관이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감독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판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것이다(제49조).

(1) 제척

여기서 제척의 사유가 되는 사적 이해관계는 1) 법관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가 사건 당사자인 경우, 또는 사건 당사자와 공동의 권리·의무자나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당사자와 현재 또는 과거에 친족관계인 경우이다. 또한 사건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로는, 3) 사건에 대한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과거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경우, 5) 불복된 이전 심급 재판에 관여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해당 법관 등은 당연 제척되어진다(제41조).

(2) 기피

당사자는 법관, 법원사무관, 전문심리위원, 감정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생각한 경우 해당 법관이 재판을 담당하지 못하도록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제43조).

(3) 회피

법관이나 법원사무관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자발적으로 감독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판업무에서 면해질 수 있다(제49조, 제50조).

< 민사소송법 >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3.31.>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49조(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164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36조(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 그를 기피하지 못한다.

제 2 절 현행법상 직무회피의 적용사례

1.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사례

(1) 국민권익위원회 해석 및 결정

1) 금전적 이해관계

① 직계비속의 소속회사에 대한 시설 용자 및 무상 지원업무

직원 A는 시설 용자 및 무상 지원 등의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자신의 직계비속 B (지원신청과는 직접적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지원 신청이 제출된 경우, 직원 A는 지원결정에 있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¹⁴⁾

국민권익위원회는 B가 해당직무에 직접 관여되어 있거나 임원이나 대주주와 같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라면, 해당 직무의 담당자인 A는 회피 여부를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¹⁵⁾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가 직계비속의 금전적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임원, 대주주임을 요구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자임을 요구한 것이다.

14)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회신된 사안임.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제13주차 자료”, p.3,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2016.10.15 방문).

15) Id..

② 본인의 소유주식 회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에 대한 인·허가 업무

A는 공공기관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허가를 신청한 B 사업자와 연관된 C업체의 주식을 25%소유하고 있다. B업체의 인·허가 결정에 따라 C업체의 수익 등이 달라질 경우 A는 B업체의 인·허가 결정에 있어 직무를 회피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¹⁶⁾

국민권익위원회는 B업체의 인·허가 결정에 따라 A가 주식을 소유한 C업체의 수익 등이 달라지므로 A가 처리하는 B업체에 대한 업무는 A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A는 B업체의 인·허가 결정과 관련된 직무를 회피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¹⁷⁾ 이에 관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상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 주식 발행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라는 요건의 해석에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학회 용역 수행 교수가 처가 이사인 회사에 대한 공사 입찰심사

A교수는 모 대학교 설계학과에 재직 중으로 국제공항의 방수공사 공법 선정을 위한 용역(7천 만원)을 B건축학회로부터 의뢰받아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법 선정’ 공고에 응찰한 9개 업체 가운데, 본인의 처가 등기이사인 C업체에 대해 최고점수를 부여하여 결국 C업체가 낙찰되었다.¹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안이 「공무원 행동강령」의 배우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회피 여부를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에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¹⁹⁾ 다만, 공무

16) Id..

17) Id..

18)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2014.9), p.6.

19) Id..

원행동강령의 적용범위가 수탁용역의 책임자나 이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이에 대한 직근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을 누구인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④ 경리담당 지자체 공무원의 처와 동생운영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업무

A는 모 기초자치단체 경리업무의 담당자로서 행동강령책임관 등과 상담하지 않고 자신의 처와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들과 공공기관용 집기류와 가구 구입을 위해 총5회, 54백 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20)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직접적 금전적 이해가 있는 사안으로 보아 행동강령 위반행위로 인정하였다.21)

⑤ 지자체 건축심의위원의 사촌동생 소유 건물 신축허가 심의

A는 기초자치단체 국장으로 건축심의위원을 맡아 이종사촌동생으로부터 ‘이번 건축심의위원회에 자신의 땅이 건축물 신축허가 건으로 회부됐으니 잘 봐 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고, 심의위원들에게 사전 연락을 취해 신축허가 필요성을 주장하여 다른 위원들의 반대 없이 통과시켜 처리하였다.22)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관련자가 이종형제인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직무 회피사유인 민법상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되어 행동강령책임관 등과의 상담없이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인정하였다.23)

20)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제13주차 자료”, p.3.

21) Id..

22) Id.,p.4.

23) Id..

2) 비금전적 직무관련자

① 시험출제위원의 자녀가 12차에 걸쳐 시험에 응시한 경우

모 대학교 언어연구원장인 A교수는 도급계약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 규정상 시험출제위원이 출제하는 시험에 출제 관련 직원 가족이 응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책임관 등과 상담하지 않고 본인의 자녀가 총12회에 걸쳐 응시하게 하였다.²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하여 공무원이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직무를 회피하도록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으로 인정하였다.²⁵⁾

② 친족의 면접시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

중앙행정기관 사무관 A는 소속 기관의 무기계약직 채용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심사절차를 회피하지 않고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²⁶⁾

국민권익위원회는 심사업무를 회피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안 공무원에 대하여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직무를 회피하도록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으로 인정하였다.²⁷⁾

③ 파견공무원의 자신의 처 특혜 채용

기초자치단체 A공무원은 산하 공단에 파견되어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처를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인사규정을 임의로 개정한 후, 상급자인 이사장에게 사전보고나 채용담

24) Id..

25) Id..

26) 국민권익위원회, (2014.9), p.6.

27) Id..

당 직원에 대한 고지 등도 없이, 별도의 공고를 거치지 않고 1인 면접을 통해 정규직원으로 특별채용하였다.²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6조(특혜의 배제) 및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인 것으로 결정하였다.²⁹⁾

3) 판례

어린이집 인가 기준 중의 하나인 방염성능검사 합격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서 소방공무원 A가 자신의 처 B가 관련된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위한 방염성능검사 신청을 받고, 허위로 방염성능검사 합격성적서를 작성한 후 최종 결재권자인 과장의 결재없이 B에게 방염성능검사 합격성적서를 교부하였다. 어린이집 인가신청에 탈락한 C가 국민권익위원회에 B의 성적서 교부과정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광역 소방본부의 조사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³⁰⁾

이 사안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단순 민원업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직근 상급자 및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고 임의로 업무를 처리한 A의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³¹⁾

2. 기타 직무회피 관련 사례

(1) 법관 기피신청 사건

「민사소송법」 제41조 제2항의 법관기피신청요건인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28) Id.,p.7.

29) Id..

30) 부산지방법원 2013.4.18.선고 2012구합5900판결.

31) Id..

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³²⁾

(2) 중재인 기피신청 사건

「중재법」은 중재인 기피사유에 대하여, 중재요청을 받거나 선정된 중재인이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당사자에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피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제13조). 법원은 이러한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제41조 제척사유와 같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이는 중재재판이 내려진 이후 뒤늦게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³³⁾

제 3 절 직무회피 관련 현행법 비교분석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에서의 직무회피 관련 규정을 비교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다음 표2 참조).

적용 대상자는 각 법에서 정하는 제도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부정청탁법」이 적용범위가 가장 넓게 되어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순이라고 할 수 있다.³⁴⁾

32) 대법원 1992.12.30. 자 92마783결정.

33)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다47901판결.

34) 「민사소송법」은 비교에서 제외함.

직무 배제 요건을 보면,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인적, 물적, 업무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직무 간여 금지를 선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 관여가 제한되는 경우와, 직무 수행이 부적절한 경우에 이를 행동강령책임관, 상관이나 소속기관장 등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경우로 나뉘 볼 수 있다.

그 절차에 있어서도 당사자 본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와 감독권을 가지는 자가 직권으로 배제조치를 취하는 경우로 나뉘 볼 수 있다.

직무 배제의 방식에도 단계적으로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대리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적용 예외 사유에 있어서도 ‘다른 법에서 정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직무 회피가 불가한 한 경우’ 등 각 법에서 각 제도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상의 주식백지신탁제도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직접적인 재산적 이해관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다만 적용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적 범위 면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직무 회피 규정보다는 좁다고 할 수 있으나, 보유 주식을 통해서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직무 회피 관련 현행 법령 비교

법령		적용대상	이해관계의 범위		회피 직무	절차	예외
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 공직유관 단체 임직원	재산상 이해관계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근상급자,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 → 직무의 일시 재배정 • 소속기관장에 보고 → 인력의 재배치 (수행부적절시) 	단순민원업무 (공정 직무수행에 영향이 없는 경우)
			직무 관련자	4촌 이내의 친족 재직단체 (2년전~)			
공직자 윤리법	주식 백지 신탁	재산공개 대상자	주식 소유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발생기업의 경영·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을 통한 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에 대리조치 • 직위변경신청 (소속기관장에)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서 직무수행 규정) → 관여내역 공직 자 윤리위원회 에 신고 → 관·공보에 게재

제 2 장 직무회피 관련 현행 법령 및 그 적용

법 령		적용대상	이해관계의 범위		회피 직무	절 차	예 외
	퇴직 공직자	퇴직공직자	처리 업무		직접 처리한 업무		국가안보· 공익상 필요 (공정 처리에 영향이 없는 경우) →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승인
		기관업무 기준 취업심사 대상자			퇴직 전 2년~퇴직시 까지 근무기관이 취 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한 업무: 퇴직 시~2년간 취업금지		
부정청탁법		공직자등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직원등, 언론인)	청탁, 금품수수 관련 업무		부정청탁, 금지된 금품수수 관련 부적절한 업무	소속기관장이 • 직무참여일시금지 • 직무대리자의 지정 • 전보 • 기타 조치 -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 사무분장의 변경	
민사 소송법	제 칙	법관, 법원사무관, 전문심리 위원	사건 당사자	- 본인, (전)배우자 - 당사자와 친족관계 (현·과거)	재판업무	당연 배제	

법 령		적용대상	이해관계의 범위		회피 직무	절 차	예 외
			업무상 관련성	-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 대리인, 재판 관여			
	기 피	법관, 법원사무관, 전문심리위원, 감정인	- 공정 재판 기대 곤란			당사자의 신청 → 법원의 허가	
	회 피	법관, 법원사무관	- 제척사유 - 공정 재판 기대 곤란			법관 등의 신청 → 법원의 허가	

제 3 장 직무회피 관련 해외 제도 및 입법

제 1 절 미 국

1. 이해충돌 기본원칙

(1) 정부의 기능과 이해충돌

미국 의회가 채택한 재정상 이해충돌법들의 기본원칙과 미국 행정부가 공포한 관련 규정의 기본원칙은 “공무원은 정부에 전적으로 충성해야 한다”³⁵⁾는 것과, 담당공무원에 의한 결정, 자문, 권고는 공익을 위해 행해진 것이어야 하며, 설사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적인 경제적 이익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³⁶⁾ 1960년대 주요 이해충돌 관련 규정의 개정을 발표한 하원법사위원회(House Judiciary Committee)는 그 기본원칙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첫째, 민주정부의 올바른 작동은 담당공무원이 독립적이고 공정할 것을 요구하며, 둘째, 정부 결정과 정책이 정부구조 내에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 만들어 질 것과, 셋째 일반 국민이 정부의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사적 이익과 직무상의 의무 사이에 사실적 또는 잠재적 충돌이 존재하거나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경우, 위 세 가지 목표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달성되기 어렵다고 하였다.³⁷⁾

35) H. Rpt. No. 748, 87th Cong., 1st Sess. at 3 (1961). House Judiciary Committee report on the comprehensive amendments and revisions to the conflict of interest laws in 1962. Jack Maskell, “Financial Assets and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on in the Executive Branch,”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anuary 17, 2014), p.1에서 재인용. (이하, Jack Maskell, (January 17, 2014)로 약칭).

36) H. Rpt. No. 748, pp. 4-6; United States v. Mississippi Valley Generating Co., 364 U.S. 520, 549 (1960); Association of the Bar of the City of New York, CONFLICT OF INTEREST AND FEDERAL SERVICE, at 3-4 (1960). Jack Maskell, (January 17, 2014), p.1에서 재인용.

37) H. Rpt. No. 748, pp. 4-6, Jack Maskell, (January 17, 2014), p.1에서 재인용.

“이해충돌”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용법과는 달리 연방법과 공무원 수행규정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에는, 한편에는 연방 고용인의 공무상 의무와 책임이, 다른 한편에는 고용인의 개인의 재정적 또는 경제적 이익 사이의 잠재적 충돌과 관련된다.³⁸⁾

고용인의 개인의 재정적 또는 경제적 이익은 고용인 개인이나 또는 고용인과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그 이익이 고용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특정 단위, 개인, 조직의 것일 수도 있다.³⁹⁾ 따라서 “공정함”의 의무를 지는 연방고용인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연방법은 제척(자격제한), 공개, 매각의 방식으로 이해충돌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2) 사법·행정의 성격과 ‘공정함’의 의미

미국법상 연방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의 개념에서 이해되는 “공정함(impartiality)”은 연방법원판사에게 요구되는 것과 같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기능을 하는 공직자를 위해 마련된” “엄격한” 중립 요건을 부여하는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 Clause)은 사법기능과는 다른, 집행의, 행정상의 의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⁴⁰⁾ 그리고 연방정부 고용인에게 요구되는 “공정함”이 모든 연방고용인이 사안이나 문제에 있어, 비경제적 “이익”과 배경 상 고용인이 관계하는 윤리적, 종교적, 이

38) Manning, *Federal Conflict of Interest Law*, pp. 2-3 (1964); Association of the Bar of the City of New York, *Conflict of Interest and Federal Service*, p.3(1960); House Committee on Ethics, *House Ethics Manual*, 110th Cong., 2d Sess. p.187 (2006); Regulations of the Office of Government Ethics, 5 C.F.R. part 2635. Id., p.2 재인용. 예를 들어 미국법령 제18편 § 205와 같이 재정 이익 또는 보상을 받는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나 “이해충돌”조항이라 불리는 법규 또는 법령이 있다. 이는 공무원이 보상을 받지 않을지라도 연방기관을 상대로 사적 단체를 위한 대리인이나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을 금한다. Jack Maskell, (January 17, 2014), p.2, 각주 6.

39) “Impartiality in Performing Official Duties,” 5 C.F.R. part 2635, subpart E, ¶¶ 2635.501 *et seq.* Jack Maskell, (January 17, 2014), p.2 재인용.

40) *Marshall v. Jerrico*, 446 U.S. 238, 248 (1980). Jack Maskell, (January 17, 2014), p.3 재인용.

념적, 정치적 믿음과 같은 요소에 기초한 사안에 대해 어떠한 사적 견해, 관점, 지위, 선호를 가지지 않는다는 뜻에서, 완전하게 “중립적”일 것을 의미하는 것 또한 아니다. 즉 공무원의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 견해로 인해 업무상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2. 제척

(1) 적용대상

미국 연방법전 제18편 § 208(18 U.S.C. § 208)은 행정부 공무원 또는 고용인의 잠재적 이해충돌을 다루는 주요한 법적 방법 중 하나는 공무원(그 이익이 해당 공무원에게 귀속될 정도로 공무원과 매우 가까운 사이의 사람들이나 단체)이 “경제적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공무에 있어 해당 공무원 또는 고용인의 참여자격을 제한(disqualification: 이하 ‘제척’으로 칭함)하는 것이다. 제척을 요구하는 형사 규정은 행정부와 독립행정청의 모든 공무원과 고용인에게 적용되지만, 대통령과 부통령, 의회의원, 연방판사는 제외된다고 하고 있다.⁴¹⁾

또한 연방행정부 또는 독립행정청의 공무원이나 피고용인 외에도 연방준비은행장, 공무원, 피고용인, 콜롬비아구의 공무원과 피고용자도 제208조의 적용을 받으며, 특정직 정부 피고용인(a special Government employee)⁴²⁾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부의 공무원이나 피고

41) 18 U.S.C. § 202(c). Jack Maskell, (January 17, 2014), p.p.3,7 참조. 법령은 대통령과 부통령과 같은 선출된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헌법상 요청되는 기능을 잠재적으로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letter to Senate Committee on Rules and Administration, from Dept. of Justice, Acting Attorney General Laurence H. Silberman, September 20, 1974, Jack Maskell, (January 17, 2014), p.3, 각주 17.

42) “특정직 정부고용인(special Government employee)”은 보수여부와 관계없이 연이은 365일의 기간 동안 130일을 초과하지 않게 미국 연방정부의 입법, 행정부, 미국 연방이나 콜롬비아구의 독립행정청의 공무원이나 피고용인직을 수행하도록 지정, 임명, 고용된 자로서, 상근자, 비상근제를 묻지 않으며, 미연방 시간제 위원, 미연방 시간제 치안판사, 임명된 기간이 며칠 동안인가에 관계없이 chapter 40 of title 28에

용인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자(participates personally and substantially)도 마찬가지로이다.

(2) 재산상 이해관계의 범위

1) 인적 범위

제208조는 공무원 자신, 배우자, 부양 자녀,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공무원 본인이 관리자, 장, 수탁자, 무한책임자원으로 있는 단체, 공무원 본인이 협상 중에 있거나 장래의 고용에 관하여 협의 중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2) 물적 범위

자산 또는 소유권 이익의 가치에 대해 법으로 분명하게 최소 가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제한은 공무원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 회사나 해당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도 포함된다. 또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만 있다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는 비영리나 공익단체인 경우도 포함된다.⁴³⁾

따라 임명된 독립상담관, section 594(c) of title 28에 따라 독립상담관에 의해 임명된 자가 해당되며, district이나 State 의회의원으로서 비상근으로 지역대표직을 수행하는 사람도 이에 포함된다. 18 U.S.C. § 202 (a).

43)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Guidance on Ethics and Conflicts of Interest (1984), p.2. (이하, U.S. EPA Guidance, (1984)로 약칭).

[표 3] 재산적 이해관계에 관하여 미국 환경보호청의 제시된 사례⁴⁴⁾

재산적 이해관계의 예	환경보호청의 판단
새로운 수행기준이 공표될 당시, 추가적인 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는 시멘트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10주를 보유한 공무원의 경우, 이 공무원의 통상업무가 규칙의 초안을 작성하고 해석하는 업무를 담당	해당 공무원은 규칙제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살충제 등록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보호청 공무원의 처가 은퇴자금을 위해 살충제제조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주식 발행 회사로부터의 신청을 처리하는 업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
살충제 등록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보호청 공무원의 처가 살충제제조사에 근무하면서 EPA의 살충제 등록신청을 한 경우	법문상 제208조(a)가 배우자의 고용주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가 살충제등록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님
환경보호청 공무원에 적용되는 보충적 윤리 행동기준에서 금지되는 재산적 이해관계	
자동차배출관리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자동차제조와 자동차오염관리장치와 관련된 제조업체에의 대외 취업, 주식보유, 기타 재산상 이익을 보유하는 경우	
살충제관리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환경보호청에 등록된 살충제의 제조나 도매공급과 관련된 제조업체에의 대외 취업, 주식보유, 기타 재산상 이익을 보유하는 경우. 동종 업종 중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적용되나, 일반 대중에 대한 소매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정보원관리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정보관리계약이나 컴퓨터 관련계약업무에 관여한 경우, 정보관리, 컴퓨터, 정보처리회사에의 대외 취업, 주식보유, 기타 재산상 이익을 보유하는 경우	

44) Id., p.3와 5 CFR 2635.105에 따라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규정하는 Title 5, Chapter LIV, Part 6401의 “Supplemental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내용을 참조하여 표로 구성.

「지표광산관리 및 매립법(Surface Mining Control and Reclamation Act)」하의 업무나 의무를 부담(내무부에서 지표광산국의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는 것과 같이)하는 직원이 지하나 지표상의 석탄광산운영 관련 직접 또는 간접적 이익을 보유하는 경우

제한을 받는 재산적 이익의 최소가치에 대해 법이 제시하는 바는 없지만 제208조는 공직자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의 장이 제정하는 규정에 의해 너무나 관련성이 없거나 미미하여 연방공무원의 정부업무 수행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을 특정 투자와 이익 유형을 면제하고 있다.⁴⁵⁾ 이에 따라 제정된 공직자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 규정은 일정한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의 그와 같은 몇몇 이익을 제외한다.⁴⁶⁾

그 이익에는, ① 모든 “분산된” 뮤추얼 펀드에 있어서의 이익, ② 정부 업무에 의해 영향을 받는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회사들이 해당 펀드가 특화한 주요 분야 외에 있는 펀드에서의 이익, ③ 그리고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펀드이나, 펀드로부터의 이익이 5만 달러 이하인 경우, ④ 정부 업무에 당사자이며 업무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회사의 공매가 가능한 증권, 주식, 채권으로서 금전 가치가 1만 5천 달러 이하인 경우, ⑥ 피고용인의 소유 이익이 2만 5천 달러 이하이고, 업무상 구체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정부업무에 영향을 받는 집단에 속한 회사의 증권, 주식, 채권(만약 그러한 소유 증권이 하나 이상의 회사에 의해 발행되는 것이라면, 법정 예외가 되기 위한 총 가치는 5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이 포함된다.⁴⁷⁾

또한 제208조는 공무원 및 가족 등의 “재산상 이해”를 요구하는데, 이는 재산상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현실적 가능성”의 의미로 해

45) 18 U.S.C. § 208(b)(2). Jack Maskell, (January 17, 2014), p.4 재인용.

46) 5 C.F.R. § 2640.202. Jack Maskell, (January 17, 2014), p.4 재인용.

47) 5 C.F.R. § 2640.201 (mutual funds); § 2640.202 (securities in companies). Jack Maskell, (January 17, 2014), p.7 재인용.

석되었다.⁴⁸⁾ 공직자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규정은 정부업무 해당 재산적 이익에 “직접적 또는 예측가능한 영향을” 줄 경우, 피고용인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⁴⁹⁾ 그리고 공직자윤리국은 “해당 문제에 대해 취해진 어떤 결정 또는 조치와 어떤 예견되는 효과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다시 말해, “인과관계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지도 않고” “그 사안과 독립하여 그리고 상관없는 사건의 발생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문제가 재정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한다.⁵⁰⁾

3) 시간적 범위

제208조에서의 이해관계의 존재 시점은 현재시제로 서술되어 있고 오직 현재 재산상의 이해와 장래의 고용을 위한 협의 또는 현재 합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의 소속 또는 이전 재정적 이익 때문에 자격 제한을 요구하지는 않는다.⁵¹⁾ 비록 과거의 소속과 이전의 경제적 이익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과거 고용 때문에 고용인이 자격을 얻은 특정연금은 현재 그리고 현존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다.⁵²⁾ 이해충돌은 고용자 자신이 연금지급을 할 의무가 있는 “연금액보증제(defined benefit plan)”에 있어 전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지출이 이미 형성되고 기금조성된 퇴직 계좌에

48) 미국 항소법원은 제208조의 “제척”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피고용인이나 관련된 단체의 재산적 이익에 대한 영향이 재산상 이익 획득이나 손해의 추정이나 가능성과는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실질적인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였다. *United States v. Gorman*, 807 F.2d 1299, 1303 (6th Cir. 1988), 5 C.F.R. § 2635.402(b)(1)(ii). Jack Maskell, (January 17, 2014), p.4 재인용.

49) 5 C.F.R. § 2635.402(a). Jack Maskell, (January 17, 2014), p.4 재인용.

50) 5 C.F.R. § 2635.402(b)(1)(i). Jack Maskell, (January 17, 2014), p.4 재인용.

51) *CACI, Inc.-Federal v. United States*, 719 F.2d 1567,1578 (Fed. Cir. 1983); *Center for Auto Safety v. F.T.C.*, 586 F. Supp. 1245, 1246 (D.D.C. 1984). Jack Maskell, (January 17, 2014), p.5 재인용.

52) Jack Maskell, (January 17, 2014), p.5.

서 인출되는 “확정 각출형 퇴직 수당 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⁵³⁾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법에 명시된 자격 제한 요건의 해석상 정부윤리국(the Office of Government Ethics: OGE)이 “연금액보증제(defined benefit plan)”⁵⁴⁾를 “자격을 제한시키는(disqualifying)” 피고용인의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하지는 않을 것이다.”⁵⁵⁾

(3)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

제208조는 재산상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 고용인의 재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계약, 소청제기, 기소, 체포, 규제 입안, 적용, 결정과 같은 문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의 지급, 계약, 결정 뿐 아니라 규칙제정과 정책결정에도 적용되어진다.⁵⁶⁾ 다만, 규칙제정의 경우에는 특정 회사나 산업에 대해 특별히 영향을 주는 것만 해당되며 산업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된다.⁵⁷⁾

이 경우 연방공무원에게 금지된 “참여”는 “결정, 승인, 반대, 권고, 조언 제공, 조사 등...을 통해 직접적이고(personally) 실질적으로(substantially) ... ” 문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제208조의 수식어구 “직접적으로(personally)”는 부서의 장이 모든 부서의 문제에 대해 책임진다는 것과 같이 전반적, 일반적 책임 하에 업무를 담당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의미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정부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취하는

53) 회사가 매년 직원 은퇴기금에 적립할 의무액을 정해 놓고 적립하는 제도.

kotra 국가정보 (미국, 뉴욕 무역관), “미국의 노무관리제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3. 9. 30.) <http://www.kotra.or.kr/>.

54) 직원이 은퇴 후 일정연금을 평생 받도록 규정하고 매년 그에 따라 상응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제도. kotra 국가정보 (미국, 뉴욕 무역관), “미국의 노무관리제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3. 9. 30.) <http://www.kotra.or.kr/>.

55) OGE Memorandum 99 x 6, to Designated Agency Ethics Officials, April 14, 1999. Jack Maskell, (January 17, 2014), p.5에서 재인용.

56) U.S. EPA Guidance, (1984), p.2.

57) Id.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이 채택한 규정은 직접적 참여가 “해당 문제에 부속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감독에 의한 참여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⁵⁸⁾ 수식어구 “실질적으로(substantially)”는 단지 “법령상의(ministerial)” 또는 절차적 조치나 지엽적인 문제는 제외하며, 문제에 단순히 쏟는 시간이 아니라 중요성과 관여의 성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⁵⁹⁾

한편, 참여가 제한되는 공무원 직무상의 재산상의 이해관계는 그가 관련된 외부기관에도 미치지만, 그러한 기관이 공공정책문제를 옹호하는 비영리기관인 경우 그러한 기관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문제가 이해충돌로서 자격제한을 요구하지는 않는다.⁶⁰⁾

(4) 적용 면제

행정부 공무원이나 피고용인은, 피고용인의 이익이 실질적이지 않거나 공적 업무수행의 온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는 직무회피가 적용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⁶¹⁾

첫째, 공무원이나 피고용자가 먼저 성격상, 사법적 또는 기타 절차, 신청, 규칙 등 결정에 대한 청구, 계약, 소청, 논쟁, 비용청구, 기소, 체포 또는 다른 특정 사항적 상황상 자신의 임면에 책임을 지는 정부 공무원에게 미리 고지하고,⁶²⁾ 재산적 이익에 대하여 완전히 공개한

58) 5 C.F.R. § 2635.402(b)(4). Jack Maskell, (January 17, 2014), p.5 재인용.

59) *Note discussion in Perkins, The New Federal Conflict of Interest Laws*, 76 HARVARD LAW REVIEW, 1113, 1128 (1963), Jack Maskell, (January 17, 2014), p.5 재인용.

60)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Legal Counsel [OLC], Memorandum Opinion for the General Counsel Office of Government Ethics, January 11, 2006, Jack Maskell, (January 17, 2014), p.4 재인용.

61) 18 U.S.C. §208(b)(1). Jack Maskell, (January 17, 2014), p.4.

62) 예를 들면, 미국 환경보호청의 경우, 지명 (환경보호)청윤리관(the Designated Agency Ethics Official)이 208(b)(1)에서의 면제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0 C.F.R. § 3.301. 여기서 윤리관은 부법무담당관(the Deputy General counsel)을 청윤리관으로 지명하였는데, 부윤리관(the Deputy Ethics Official)은 재산상 이익의

후, 임면권자로부터 이익이 정부가 그 공무원이나 피고용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공정성(integrity)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to be deemed likely to affect)정도로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서면결정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는 직무회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⁶³⁾ 각 부처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을 두고 있는데, 관련 담당관의 지정,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 처리 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다.⁶⁴⁾

[표 4] 미국 환경보호청의 제척 면제신청 인정 기준⁶⁵⁾

- 재정상 이익
- 회사의 크기
- 회사의 발생 주식 중 피고용인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
- 의사결정절차에서의 피고용인의 역할

예를 들면, 미국 환경보호청의 경우 제208(b)(1)조의 이행을 위해 내부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면제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① 미국 연방 정부나 행정청이 발행하는 채권이나 유가증권, ② 뮤추얼 펀드 지분(특정 산업 투자에 집중하는 경우는 제외), ③ 보험회사에 의해 발행된 생명보험증권, 보장성투자계약, 변액연금, ④ 은행, 저축대출기관, 신용금고, 유사 금융기관에의 예탁, ⑤ 자신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⁶⁶⁾

크기와 상관없이 면제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용인은 부윤리관을 통해 지명 청윤리관에게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63) 18 U.S.C. §208(b)(1).

64) U.S. EPA Guidance, (1984), p.5. 재정상의 이익이 10,000달러 이상이거나, 주가에 상관없이 피고용인의 담당 업무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발행 회사의 직접적 그리고 특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이나 결정업무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면제가 주어지지 않는다. Id..

65) Id..

66) 40 C.F.R. § 3.301(b). Id. U.S. EPA Guidance, (1984), p.5.

둘째, 「연방자문위원회법(the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담당하는 특별 정부 피고용인의 경우, 충돌되는 이해관계가 실질적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윤리법(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에 따른 재산공개보고서의 심사 후에 해당 피고용인의 임명에 책임지는 공무원이 개별적 직무의 필요성이 관련된 재산상 이익에 형성되는 잠재적 이해충돌을 능가한다는 내용의 서면상의 적용면제를 작성할 수 있다.⁶⁷⁾

(5) 회피 절차

회피 또는 자격제한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문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달성된다. 사안에 대한 자격박탈이 필요함을 아는 고용인은 “그의 과제에 책임있는 사람”을 알려줄 것을 지시 받고, 그런 다음 그 책임자는 해당고용인이 그 문제에 참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필요한 조치라도 취할 것”을 지시받는다.⁶⁸⁾ 공직자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의 “윤리 협정서(ethics agreement)”를 준수하기 위하여 담당관으로부터 요청되지 않는 한,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요청되지 않는 한, 서면상의 또는 제출되어야 할 기피제한에 대한 일반적 요건은 없다.⁶⁹⁾ 피고용인은 자격제한에 관한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기록을 남겨둘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되어진다.

서면상의 회피서면에 대한 일반 요건은 없지만, 특정 행정청의 피고용인은 소속 행정청이 정한 보충적 윤리규칙에 의해 그러한 서면상 회피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요구되어질 수도 있다.

67) 18 U.S.C. § 208(b)(3).

68) 5 C.F.R. § 2635.402(c)(1). Jack Maskell, (January 17, 2014), p.6.

69) 5 C.F.R. § 2635.402(c)(2). Jack Maskell, (January 17, 2014), p.6.

(6) 위반효과

미연방법 제208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0,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가 병과될 수 있다.

제 2 절 캐나다

1. 이해충돌 기본원칙

캐나다의 「이해충돌법(the Conflict of Interest Act)」⁷⁰⁾은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상황을 명확히 하고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첫째, 공무원에 대해 이해충돌상황을 명백히 하고, 퇴직 후 취업에 관한 규칙을 설정하고, 둘째, 공무원의 사익과 공적 의무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충돌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발생가능한 공익적 갈등해결책을 제공하며, 셋째,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동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는지를 결정할 권한을 이해충돌윤리위원회에게 주고, 넷째, 경험 있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공직을 찾고 수락하는 것을 장려하고, 다섯째, 사적 부문과 공적부문 간의 상호 교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직상의 권한이나 의무의 수행을 통해 자신의 사익이나 친척, 친구의 사익을 증진시키거나, 부적절하게 타인의 사익을 증진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이해충돌법」은 이해충돌의 해결수단으로서 직무회피, 재산등록 및 공개, 공개신고(직무회피 사항 포함), 백지신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70) Conflict of interest Act, (12.12.2006).

2. 직무 회피

(1) 이해충돌법

1) 적용 대상

「이해충돌법(the Conflict of Interest Act)」은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등록 대상 공무원(reporting: 장관, 의회 사무처장, 각 부처 직원, 차관, 국영기업의 장과 연방 위원회(board, agency, commission)의 전일제 근무직원)과 비등록 대상 공무원(non-reporting: 각 부처와 연방위원회의 파트타임 지원) 모두 포함된다.

2) 적용 요건

캐나다 「이해충돌법(the Conflict of Interest Act)」은 공직자는 공직상의 권한이나 의무의 수행이 자신의 사익이나 친척, 친구의 사익을 증진시키거나, 부적절하게 타인의 사익을 증진시키는 경우 이해충돌이 있다고 하고 있다(제4조).

① 이해충돌의 인적 범위

이해충돌이 되는 사적 관계의 범위를 보면, 본인 외의 “친척 및 친구”라는 다소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⁷¹⁾ 이 법에서 ‘가족’의 정의는, 1)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2) 직계비속 자녀와 그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배우자의 부양자녀이다(제2조제2항).

‘친척’은 윤리위원이 일반 또는 특정 공무원에 관해서, 동법의 목적상 어떤 사람 또는 부류의 사람이 공무원의 친척으로 고려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해당 공무원과 출생, 혼인, 사실혼배우자, 입양, 밀접한 관련성으로써 관련 있는 자이다(제2조제3항).

71) 「이해충돌법」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인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적 이해관계의 계약체결 금지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 등은, “배우자·사실혼 동거인·자녀·형제·부모”로 명시하고 있다.

② 이해충돌의 물적 범위

사적 이익은 다음의 결정과 문제에 대한 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1)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경우, 2) 광범위한 인적 부류 중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3)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 또는 이익에 관련된 것일 경우

③ 직무 회피 의무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그 공직자가 본인이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해충돌상황에 있음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공직상의 권한이나 의무의 수행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제6조제1항) 그리고 이러한 이해충돌상황에 있어서 공직자 본인은 논의, 결정, 토론, 표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1조).

③ 직무 회피 절차

그리고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직무회피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 공무원은 직무회피 시작일 60일 내에 피하여야 할 이해충돌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자세한 사항을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제25조제1항).

이 때 공직윤리위원회 위원은 공직자가 이 법을 준수하고 그 일환으로 공직자와 동의서약을 맺는데 있어 적절한 수단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제29조).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수단으로는 이해충돌확인(a conflict of interest screen)이 있는데, 이는 신고된 공직자의 소속기관이나 부서 내에서 이해충돌 상황에 있는 공직자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서, 의사결정,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⁷²⁾ 확인된

72) Office of the 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er, “Conflict of Interest Screens and other Compliance Measures,” p.1, <http://ciec-ccie.parl.gc.ca/Documents/English/Public%20Office%20Holders/Conflict%20of%20Interest%20Act/Backgrounder%20-%20CoI%20Screens%20and%20Compliance%20Measures.pdf> (2016.11.7.방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부서 내의 개인은 고지되어지며, 조직이나 부서 내의 또 다른 사람이 확인업무를 담당하고 신고된 공직자가 확인된 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도 참여치 않음을 확실하게 한다.

이해충돌확인 은 일반적으로 신고된 공직자가 자신의 친척이나 친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의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이루어진다. 제29조의 장점은 규제적이기 보다는 지원을 한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에는 신고된 공직자가 그러한 논의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서 이해충돌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이해충돌확인 은 실시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신고된 공직자는 만일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 법 제21조에 따라 직무회피를 하여야 하며 회피일로부터 60일이 내에 고지하여야 함을 공직자에게 알린다.

(2) 의원강령

또한 338인의 의회의원에 대하여는 「의원강령(Members' Code)」도 적용되어진다. 장관인 하원의원이나 정무차관에 대하여는 강령과 윤리법이 모두 적용된다. 「의원강령(Members' Code)」에 따르면 그들이 속한 하원이나 위원회에서 다뤄질 사안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적 이익의 일반적인 성격을 신고(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에 관한 논의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방식은 구도 또는 서면으로 하며, 사익의 일반적 성격은 하원의 사무총장(clerk of the house)에게 서면으로 즉각 고지하여야 한다. 의원이 신고해야 하는 날 이후에 이해충돌상황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즉각 고지해야 한다. 하원의 사무총장은 그러한 고지가 의회보(journal)에 기록되도록 해야 하고, 의회의원들의 고지문서를 담당하는 윤리위원 (commissioner)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하원이나 위원회에서 논의 외에도 의원의 의무나 역할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적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원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강령은 그러한 사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데, 1) 일반적 적용, 2) 광범위한 부류의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의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의회의원으로서 의원의 행위에 관계된 법적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의회법(Act of Parliament)에 따라 제공되는 의원의 보수나 수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적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section 3(2) (a)~(f)).

(3) 윤리위원회의 권한

이해충돌로 인해 직무회피를 해야 하는 공무원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는 해당 공직자에게 준수수단을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이에 백지신탁과 직무회피도 포함된다(Act, section 30). 윤리위원회가 발하는 명령은 위원회 공식 웹사이트에 공시가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직무회피와 관련된 명령이 발령된 적은 아직 없다.

위원회가 법이나 강령의 위반사례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와 심문을 발동할 권한을 가진다. 의원강령에 따른 조사는 심문(inquiries)라고 하며, 윤리법상 조사에 대하여는 조사(examinations)이라고 한다. 조사결과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발행한다. 의원강령에 따를 때 의원이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위원회는 하원에 해당 의원에 대한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4) 직무회피 이용의 실제

현재까지 직무회피가 보고된 적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의 경우 5월 이후에 2건의 직무회피가 보고되었으며, 2015-2016년까지

6건, 2014-2015년에 2건이며 보고된 것은 공보에 공개된다.⁷³⁾

윤리위원회는 직무회피제도 외의 윤리법상 자산매각(section 27), 외부 행위에 대한 금지(section 15), 이해충돌확인(section 29)의 사용에 의해 이러한 실제로 직무회피가 사용되는 예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⁷⁴⁾

73) 캐나다 이해충돌과 윤리위원회 사무국의 정책 및 계획 분석관에게 온라인으로 질의 후 응답된 내용임 (2016.9.13.).

74) Id..

[그림] 캐나다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의 직무회피 관련 공개선언⁷⁵⁾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of the Office of the 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er. The header includes the office's name in English and French, along with a logo and a clock tower image. A navigation bar contains links for Français, Home, Contact Us, Help, Search, and the website URL parl.gc.ca.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are social media icons and a breadcrumb trail: Home > Public Registry > Declarations. A sidebar on the left lists various public registry categories.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Public Declaration of Recusal' and includes a table of contents, a 'Statutory requirement(s)' section with text from the Conflict of Interest Act, and two specific declarations. The first declaration is dated 2016/09/20 and describes a recusal from a meeting involving Ecofuel. The second declaration is dated 2014/09/18 and describes a recusal from an employment insurance appeal case. A note at the bottom states that declarations submitted prior to April 25, 2015, are in the preferred language of the reporting public office holder or Member of the House of Commons.

Office of the 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er / **Commissariat aux conflits d'intérêts et à l'éthique**

Home > Public Registry > Declarations

Public Declaration of Recusal
As required under the *Conflict of Interest Act*

Public Registry Home

- All Results on the Public Registry
- All Results Published under the Act
- All Results Published under the Code
- All Gifts (Act and Code)
- Sponsored Travel (Code)

[Back to search results](#)

해당 공무원 당사자 이름 (A)
Date
2016/09/20

On July 4, 2016, in the exercise of my official duties, I recused myself from participating in a discussion/meeting involving Ecofuel in order to avoid the opportunity to improperly further Ecofuel's interests by provid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Ecofuel because of my friendship with Ms. 이해관계인 이름 (C) , Director of Operations at Ecofuel.

(생략)

해당 공무원 당사자 이름 (B)
Date
2014/09/18

Declarations submitted prior to April 25, 2015 are in the preferred language of the reporting public office holder or Member of the House of Commons.

During the second week of July 2014, I recused myself from an employment insurance appeal case before I could be provided an opportunity to further the private interest of a relative.

The identity of the individual in question cannot be made public as a result of subparagraph 51 (2) (b) (vi) of the Conflict of Interest Act.

75) <http://ciec-ccie.parl.gc.ca/EN/PublicRegistries/Pages/Declaration.aspx?DeclarationID=b76acbb0-947e-e611-afe0-000e1e0776f0>.(2016.11.7.방문).

제 4 장 직무회피 관련 제도 개선안

제 1 절 공직윤리의 기본 이념

(1) 이해충돌과 직무수행의무

「헌법」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과,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로 보장됨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7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과(제59조), 법령준수와 성실 직무수행의무(제56조),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제57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직무회피에 대한 신청권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성실 직무수행의무와의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미국의 이해충돌의 기본원칙을 참조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제3장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올바른 작동은 공무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책결정이 공정 절차에 의해 뒷받침 될 것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데,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전제요건이 제대로 만족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즉,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성실한 직무수행이 사실상 이루어지기 힘들게 되므로, 이러한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직무회피는 정부의 정당한 기능이 이루어지기 위해 선결적으로 갖춰져야 할 사항을 위한 것으로, 이를 성실 직무수행 의무와 동일한 선에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이해충돌이 없는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직무수행의무와 성실의무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한 직무수행이

사실상 기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직무수행의무의 부과는 적절하지 않는 업무처리라는 모순된 결과를 낳는다.

(2) 직무 회피 관련 제도의 구분과 체계화

직무회피와 관련된 각 요건 및 절차, 효과 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에 따라 그 정도와 엄격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직무회피와 관련하여서는 각 법령상 규정된 제도를 볼 때, 법령상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에서 당연히 배제되고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 관여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제척’에 준하는 경우와,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의해서 직무에서 면하게 되는 ‘회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절차적으로 볼 때, 직무 수행이 부적절한 경우에 당사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회피 신청이나 요청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직속상관 또는 소속기관장 등에게 상담이나 보고 후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감독자의 직권으로 판단하여 배제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직무회피 방식으로는 단계적으로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직무회피의 기간이나 범위에 따라 상관의 조치로서 가능한 경우나 소속기관장의 처분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요건, 및 절차, 효과의 정도와 범위는 이해충돌되어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달리 운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공직자윤리법 개선안

1. 주식백지신탁의 직무회피제도 개선방향

(1) 직무 ‘회피’의 법적 의미의 반영

다른 법률에서 사용되는 유사 용어와의 비교를 해 볼 때 직무 ‘회피’는 관련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직무를 피하기 위하여 「공무원행동강령」의 경우, 공무원이 먼저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제척, 기피와는 다르게 회피의 경우는, 법관이나 법원사무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직무를 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청탁법」은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판단으로 직무 참여중지 등을 조치하므로, 회피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의 경우에는 제14조의11에서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금지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2항의 경우는 회피를 위해 해당 공직자가 “직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의 경우는 법률에 의해 직접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경우에도 직무의 “회피”를 담당 직무를 타인에게 맡김으로서 직무를 면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자발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보다 적극적인 “회피”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회피’ 수단 마련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1는 “직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공직자가 다른 사람에게 직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행동강령」과 같이 직근 상급자 등에 직무에서 배제되어질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참고해 볼 때 직무회피 수단은 보다 단계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된 주식 관련)의 경우, 제14조11의 제2조에 따라 공무원 자신의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에서 빠지면서 자신이 다른 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근 상급자나 소속기관장에게 직무회피 요청을 하고 상급자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직무를 다른 사람이 담당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하고, 담당할 사람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그 외의 부적절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요청하여 직무분장이나 배치를 재조정하여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제14조11의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조항과 제14조의13의 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3) 회피수단의 다양화의 필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직무회피 수단들을 단계화하기 위하여는 현행 「공직자윤리법」보다 회피수단을 보다 다양화할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부정청탁법」을 참고해 볼 때, 직무회피의 방법으로서 단계적으로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과 사무분장의 변경, 직무 참여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의 경우 제14조의13의 직위변경 신청을 전보의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규정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단계적인 직무회피 가능 수단들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회피를 통한 업무조정 의 합리화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상관이나 소속기관장 등에 의해 업무분장이나 전보가 이루어지는 경우, 직무회피에 있어 회피된 직무의 대리

자 등 대체할 업무담당자에 대하여는 기존 담당 업무를 고려할 때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조정수단은 기관의 내부규칙 제정을 통해, 관련 공무원의 직무회피로 인하여 직무의 교환 등과 같이 직무가 불합리하게 배분되지 않도록 공정 업무배분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회피 직무의 범위에 관한 해석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1 제1항에 있어 백지신탁 주식 및 보유주식 발행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의 간여 정도에 관하여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 공직윤리국의 해석에 따르면 직접적 작위나 부작위로 담당할 경우 외에도, 직접적 또는 적극적으로 간여한 감독행위 등도 포함한다면 해당 업무에 대한 결재권한이 있거나 지시 및 감독이 가능한 업무가 해당되어질 것이다.

다만 제14조의11 제3항에서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그 예로 들고 있는데, 이는 직무처리규칙 등에 결재권한 등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리나 대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직무회피의 사유에 해당하지만 불가피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국의 예를 참고삼아서, 직무의 필요성이 재산상의 이해충돌을 능가하며, 담당 업무와 이로 인해 영향받는 재산상 이해관계가 직접적 관련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기관장의 승인절차를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업무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주가에 대한 영향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재산상 이익으로 귀속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6) 이해관계자의 범위 조정 필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의무자는 재산공개자에 한하고, 재산공개의 인적 대상 범위가 회피해야 할 직무범위에서의 이해관계의 범위를 규정하게 된다. 따라서 재산공개에서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혼인한 딸과 배우자, 외증조부 및 외손자녀 등이 제외됨에 있어 비판이 제기되므로, 직무회피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의 인적 범위에 있어서의 개선이 요구된다.

참고로 공무원행동강령은 재산적 이해관계의 경우에는 자신,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재산등록제도의 직무회피 적용가능성

「공무원행동강령」에서는 자신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직무회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산적 이해관계 유무의 판단은 재산등록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등록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가 등록재산의 증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해충돌 발생 여지가 있는 직무로서 직무회피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행동강령」의 경우에 직무회피 관련 규정을 두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고, 위반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를 공직자의 사전적 직무회피여부에 대한 판단을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된 재산에 대하여 회피해야 할 또는 회피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에 대한 리스트 및 직무별 이해충돌 발생가능 위험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재산등록에서의 직무회피의무 위반여부를 사후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심사를 도입하여 심사하고 직무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나 제재 등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상 또는 행동강령 위반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위반사항 발견시 검찰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거나 이첩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국이나 캐나다의 예를 볼 때 이익이 지나치게 소소한 경우나, 주거 등의 생활 목적의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3.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제도에서의 직무회피 적용가능성

현행 취업제한제도를 보아 유연하게 운영하고 행위제한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화된 직무회피제도를 보다 체계화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현행법상 퇴직공직자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을 제한받지만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취업 이후에 받는 제한은 직접 담당하는 업무이다. 이러한 경우,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조건부로 취업을 허용하되 담당 업무에 있어서 강화된 제한을 둔다면 보다 융통성 있는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퇴직공직자의 경우 사인이므로, 공직자에 적용되는 본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재산상의 이익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인적 요건보다는 업무 관련성에 관한 업무상 요건을 보다 세부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인적 요건으로는 퇴직 공무원이 업무관련자인 경우 일정 기간 내 재직했던 부서의 업무나 재직 부서에서 동시에 근무했던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한다

든지 인적 관계나 업무상 관계의 일정 범위를 설정하여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역으로는 퇴직공직자와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는 현직 공직자의 직무회피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퇴직 공직자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무원과 전직 상관 등 업무상 관련이 있는 인적 관계인 경우에는 이를 회피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실상 ‘회피’보다는 ‘제척’의 의미에 더 가까울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관계를 인지한 공무원이 이해충돌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면할 수 있게 한다면 ‘회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공무원에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부여하고 일정한 요건이 만족되거나,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속 기관에서 업무에서 면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제18조의 4는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제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위법 또는 권한 남용 등의 부정청탁·알선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청탁·알선을 받은 공무원은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규정에 따른 신고사례가 전무하므로, 퇴직공직자로부터의 직무 관련 청탁·알선을 받은 경우 등으로 ‘부정청탁’이라는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청탁·알선사실의 신고 외에도 직무회피를 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한다면 퇴직공직자의 청탁·알선으로 인한 이해충돌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직무회피 조치를 사례별로 등록 및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관련 법제도의 장기적 개선 방안

직무회피를 포함하여 이해충돌에 관한 내용 중 상당부분이 현재 「공무원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고, 재산등록과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 취업 및 행위제한 등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해충돌이라는 이념 하에 공직윤리제도가 일원화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향을 볼 때, 제도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앞서 살펴본 미국의 캐나다의 경우에도 공직자윤리국이나 이해충돌및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이 통합되어져 운영되고 있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제재일변도보다는 「공무원행동강령」과 같이 이해충돌여부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 자문역할을 제공하는 방안이 줄 수 있는 적절할 수 있는데, 이를 보다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는 장기적으로는 공직윤리나 이해충돌업무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을 두어 관련 업무를 보다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국내 문헌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 (2014.9).

【 외국 문헌 】

Association of the Bar of the City of New York, CONFLICT OF INTEREST AND FEDERAL SERVICE, (1960).

Dept. of Justice, letter to Senate Committee on Rules and Administration, from Dept. of Justice, Acting Attorney General Laurence H. Silberman, (September 20, 1974).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Legal Counsel [OLC], Memorandum Opinion for the General Counsel Office of Government Ethics, (January 11, 2006).

House Committee on Ethics, House Ethics Manual, 110th Cong., 2d Sess. at 187 (2006).

House Judiciary Committee report on the comprehensive amendments and revisions to the conflict of interest laws in 1962.

H. Rpt. No. 748, 87th Cong., 1st Sess. (1961).

Jack Maskell, “Financial Assets and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on in the Executive Branch,”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anuary 17, 2014).

참 고 문 헌

Manning, FEDERAL CONFLICT OF INTEREST LAW, (1964).

Office of Government Ethics, OGE Memorandum 99 x 6, to Designated Agency Ethics Officials, April 14, 1999.

Perkins, The New Federal Conflict of Interest Laws, 76 HARVARD LAW REVIEW, 1113, 1128 (1963).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Guidance on Ehtics and Conflicts of Interest (1984).

【 법률 목록 】

한국,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7518호.

한국,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3796호.

한국,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3618호.

한국, 「민사소송법」, 법률 제14103호.

한국,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대법원규칙 제2512호.

한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78호.

한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45호.

한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3호.

한국,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헌법재판소규칙 제357호.

미국, Regulations of the Office of Government Ethics (5 C.F.R. part 2635).

- 미국,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40 C.F.R. § 3.301(b)).
- 미국,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5 C.F.R. § 2635.402).
- 미국,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5 C.F.R. § 2635.501).
- 미국,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5 C.F.R. § 2640.201).
- 미국,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5 C.F.R. § 2640.202).
- 미국, U.S. Code (18 U.S.C. 208)
- 미국, U.S. Code (18 U.S.C. 202)
- 미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Guidance on Ethics and Conflicts of Interest (1984).
- 미국, 5 C.F.R. § 2635, Title 5, Chapter LIV, Part 6401, Supplemental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캐나다, Conflict of interest Act, 12.12.2006

【 판례 목록 】

- 한국, 대법원 1992.12.30. 자 92마783결정.
- 한국,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다47901판결.
- 한국, 부산지방법원 2013.4.18. 선고 2012구합5900판결.
- 미국, CACI, Inc.-Federal v. United States, 719 F.2d 1567,1578 (Fed. Cir. 1983).

참 고 문 헌

미국, Center for Auto Safety v. F.T.C., 586 F. Supp. 1245, 1246 (D.D.C. 1984).

미국, Marshall v. Jerrico, 446 U.S. 238, 248 (1980).

미국, United States v. Mississippi Valley Generating Co., 364 U.S. 520, 549 (1960).

미국,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in United States v. Gorman, 807 F.2d 1299, 1303 (6th Cir. 1988).

【 참고 온라인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http://www.kotra.or.kr/>, (2013.9.30.방문)

캐나다 이해충돌과 윤리위원회 사무국, <http://ciec-ccie.parl.gc.ca/EN/PublicRegistries/Pages/Declaration.aspx?DeclarationID=b76acbb0-947e-e611-aefe-000e1e0776f0>, (2016.11.7.방문).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제13주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2016.10.15 방문).

Office of the 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er, “Conflict of Interest Screens and other Compliance Measures,” <http://ciec-ccie.parl.gc.ca/Documents/English/Public%20Office%20Holders/Conflict%20of%20Interest%20Act/Backgrounder%20-%20CoI%20Screens%20and%20Compliance%20Measures.pdf> (2016.11.7.방문).